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rokafa83@naver.com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9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태일케미칼(김영규) ② 포엠(주)(고정완)
- 나. 전화번호 : ① 02-2612-0121 ② 062-717-7449

2. 명칭 : 기능성 수성에폭시 하도재 및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은나노 적용 표면보호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ANYTECH[®]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 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고알칼리성의 수성에폭시 하도재를 중성화로 열화 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도포하여 알칼리성을 부여하고, 구조물 표면 강화와 노출철근의 방청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며, 신·구 콘크리트와 우수한 접착력을 갖는다.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의 제반 물성은 KS 기준을 만족하며, 내열·내한성 및 내화성 기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축팽창 현상이 없고 후기 재령에서도 초기 모르타르와 변형 없이 향상된 내구성을 발휘한다. 은나노 적용 표면보호재는 기반이 되는 세라믹우레탄 수지와 항균기능의 은나노가 복합되어 발휘되는 우수한 도막물성은 내화학적 및 물리적 성능에 의해 외부의 유해물질(CO₂, SO₂, H₂S, 염해 등)로부터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며, 매연,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내오염성 기능은 구조물의 청결함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시공 후 악취탈취 및 화재안정성 기능은 친환경적이고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이며, 표면보호재 색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구조물 외관의 미려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중성화로 열화 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알칼리성의 수성 에폭시폴리머로 조성된 기능성 수성에폭시 하도재(EPR-35)도포 후,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HCM-250)로 단면 복구한 다음,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재(HECA#200)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9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신고자 등이 직무상 비밀 준수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규정 서식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비밀 준수 의무자가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서식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문구 신설(안 별지 제1호의4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